의 안 번 호	제87호
의결 연월일	2019. 6. 20.

# ·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·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6월 13일 서원 의원 외 4 명

나. 회 부 일 자: 2019년 6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9년 6월 20일,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서 원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, 상시 점검체계 구축,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지정, 민간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(안 제3조~제6조)

- 안심지킴이 운영, 신고체계 마련, 실태조사,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, 관리자의 협조 등(안 제7조~제11조)
- 교육, 몰 카 안심지역 선정, 홍보, 시행 규칙등(안 제12조~제15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